

의안번호 제1558호	<h2 style="margin: 0;">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</h2> <h1 style="margin: 0;">검 토 보 고 서</h1>
----------------	---

### 1. 의안제출

- 가. 제출일자 : 2019. 5. 30.(목)
- 나. 제출자 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다. 예비심사 : 2019. 6. 11.(화), 상임위원회
- 라. 회부일 : 2019. 6. 20.(목)
- 마. 심사일 : 2019. 6. 21.(금)

### 2. 제안이유

- 「지방재정법」 제43조 및 「지방자치법」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가. 지출결정 현황

(단위:원)

구분	지출결정액(A)	지출액(B)	이월액(C)	집행잔액(A-B-C)
일반회계 (예비비)	686,869,000	686,867,825	0	1,175

나. 지출내역 : 4건

(단위:원)

부서	세부사업	지출결정액	지출액	이월액	집행잔액	적요
합계		686,869,000	686,867,825	0	1,175	
경제산업과	농업재해 복구비 지원	3,068,000	3,068,000	0	0	이상저온 및 우박으로 인한 농장물 재해 피해 농가에 보상금 지급
환경미화과	환경미화원 관리	643,700,000	643,699,085	0	915	민사소송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배상금 지급
환경미화과	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및 수거	17,101,000	17,100,740	0	260	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
안전총괄과	재해 응급복구	23,000,000	23,000,000	0	0	민사소송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배상금 지급

## 4. 관련법규

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129조

나. 「지방재정법」 제43조

## 5. 검토의견

- 2018년도 예비비 지출결정은 일반회계에서 총 4건에 6억 8,686만 9천원을 결정하여, 이중 6억 8,686만 8천원을 지출하고 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, 특별회계에서는 예비비 지출사항 없음.
-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는 불기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써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,  
2018년도 예비비로 집행한 농산물 재해피해 농가 보상금 지급 등 4건은 요건에 맞는 적정한 집행이라 사료됨.

# 관 련 법

**지방자치법** [시행 2017.7.26.] [법률 제14839호, 2017.7.26., 타법개정] 행정안전부(자치분권제도과)

- 제129조(예비비)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·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.
-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

**지방재정법** [시행 2019.4.17.] [법률 제15803호, 2018.10.16., 일부개정] 행정안전부(재정정책과)

- 제43조(예비비)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회계(교육비특별회계는 제외한다)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·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「지방자치법」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